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소속 이관 근거 마련 등〉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42호)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45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가. 박상혁의원안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02. 26.
3. 회 부 일 : 2025. 02. 27.

나. 박정현의원안

1. 제 안 자 : 박정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03. 18.
3. 회 부 일 : 2025. 0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상혁의원안

현 대부분 선진국들의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담당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경호처가 존재하는 것은 이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산물로

써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나. 박정현의원안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외 선진국과 같이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이관하고,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본부를 설

치하도록 하며, 대통령경호본부장에 치안정감을 보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1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7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9049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90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현행	박상혁의원안	박정현의원안
<신설>	제16조의2(국가경호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경호본부를 두며, 국가경호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경호본부장은 경호대상자(이하 “경호대상”이라고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 안전을 유지하는 경호 활동을 수행하며, 경호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	제15조의2(대통령 경호본부장) 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두며, 대통령경호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대통령경호본부장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총괄하며 대통령경호본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통령경호본부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

과 경찰서장 및 경
호부서 소속 공무원
을 지휘·감독한다.

③ 국가경호본부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한정하여 퇴
임 후 10년 이내
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
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
호 기간은 그로부
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
은 퇴임일부터 기
산(起算)하여 10년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하며, 전

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
에 따라 경호 목
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5년의 범위에
서 경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
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
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국내외 요인
(要人)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
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국가경호본부장
은 경호 목적 달성
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
정할 수 있고, 이 경
우 경호 목적상 불
가피하다고 인정되
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호구역
에서 질서유지, 교통
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
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⑥ 국가경호본부장은
대한민국에서 개
최되는 다자간 정상
회의에 참석하는 외
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
구 대표의 신변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
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
계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경호·안전 대
책기구를 둘 수 있
다. 이 경우 국가경
호본부장은 관계기

	<u>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u> <u>⑦ 제6항에 따른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시기, 구성 및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7조(하부조직) ① (생략)	제17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청장·차장·국가수사본부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국가경호본부장·국장-----.	② -----대통령경호본부장·국가수사본부장-----.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가. 개정안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였음. 2025년 1월 3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됨에 따라, 개정안들은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하여 유사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각 개정안은 규정방식과 일부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으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 간 신설조직의 명칭과, 해당 부서장의 직급, 임용 제한 규정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박상혁의원안	박정현의원안
대통령 경호기능	경찰로 이관	경찰로 이관
조직명	국가경호본부	대통령경호본부
부서장 직급	치안정감	치안정감
임용 제한	규정 없음	퇴직 후 2년 내 정무직공무원 임용 제한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는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려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¹⁾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민형배의원안, 신장식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조인철의원안) 계류 중인바, 해당 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나. 주요 검토 사항

먼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경호처가 군사정권 시절부터 유지된 권위주의적 산물이라는 의견과 최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대통령 경호업무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가 담당함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으로,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찬성하는 입장에서,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인력 운용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권력 집중을 방지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호체계라는 평가가 제기됨.

구체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를 경찰로 일원화할 경우 기존 경호처가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했던 비효율성을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설·장비 등 자원을 통합·활용함으로써

1) 민형배의원(의안번호 제2207268호), 신장식의원(의안번호 제2207304호), 황명선의원(의안번호 제2207311호), 이광희의원(의안번호 제2207347호), 조인철의원(의안번호 제2207875호)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 및 국가 예산 절감 기여가 가능하고, 경호 임무에 필수적인 수사권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임.

또한, 경호업무를 국가안보와 결부시켜 경찰업무보다 상위의 업무로 취급할 경우 경호책임자의 직급을 지나치게 높이고, 이로 인한 권력자와의 밀접성이 강화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함으로써 경호 기관의 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경호 기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충실함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호체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중 미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이 연방경찰, 국가경찰 등 일반 경찰조직이 경호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대통령 경호 임무만을 위해 장·차관급을 수장으로 하여 대통령 직속 기관을 두는 외국 사례는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해외 주요 국가별 경호조직 운영형태]

구 분	국 가	경호기관명	소 속
대통령중심제	미국	비밀경호국(SS)	국토안보부
	러시아	연방경호국(FSO)	대통령 직속
의원집정부제	프랑스	경호실(SLDP)	국립경찰청
	포르투갈	요인경호대	경찰청
	우크라이나	국가경호국	대통령 직속
	튀르키예	대통령경호국	대통령실
의원내각제	영국	왕실요인경호단	런던광역경찰청
	독일	경호총국	연방범죄수사청
	일본	경비국	경찰청(중앙)
		경비부	경시청(자치)
	이탈리아	대통령근위대	대통령 직속
		총리경호실	국가경찰
	이스라엘	경호안전국(ISA)	총리 직속

※ 자료 : 대통령 경호처

반면, 대통령 경호를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가 전담하는 것이 경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긴급상황 대응, 기밀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가 근접경호 외에도 폭발물·화생방 탐지, 대저격 대응, 무인기 대응, 통신망 보호 등 다양한 고도의 전문기능을 요구하는 종합 활동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경찰이 경호를 담당할 경우 군과의 지휘·통제 충돌 및 조정 곤란으로 신속한 작전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견해임.

또한, 경호처는 특정 임무에 집중한 조직 운영을 통해 경호 관련 기능의 통합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경찰은 치안, 수사, 교통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해 경호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분단국가라는 점에서,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는 국가들과는 안보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다음으로, 신설조직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사항 관련하여,

박상혁의원안은 경찰청 소속의 '국가경호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6조의2제1항). 반면, 박정현의원안은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경호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5조의2제1항).

조직의 명칭에 관해서는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의 주된 업무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업무이므로 '대통령경호본부'라는 명칭이 국민들에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반면, '국가경호본부'라는 명칭은 그 경호 대상이 국가 요인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명칭이라는 의견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전담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명칭을 '대통령경호본부'로 하는 것이 조직의 성격과 기능을 정확히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더 적절할 수 있으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가 요인 전체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게 될 경우를 고려한다면 '국가경호본부'라는 명칭이 더 적합할 수 있음. 따라서 신설 조직의 업무 범

위와 기능을 명확히 설정한 후 이에 맞는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음으로, 부칙(박상혁의원안) 관련하여, 개정안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을 폐지하고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제16조를 삭제하는 부칙을 두고 있음.²⁾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제3조(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의 사무는 이 법 시행 이후 경찰청 국가경호본부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찰청 국가경호본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장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대통령경호처장의 행위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경찰청 국가경호본부장의 행위 또는 경찰청 국가경호본부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다만,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효율적인 개정방식이지는 하지만 다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회 각 위

2)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한다는 점에서는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된 「대통령경호법」 개정안들과 같으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들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법안이 발의된 반면 본 개정안은 부칙을 통하여 「정부조직법」의 내용을 직접 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원회의 심사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³⁾

특히, 개정안의 부칙 제2조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은 중대한 법적 변화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입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아울러, 경호기능을 경찰청에 이관함에도 행정안전부의 사무를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4)에 ‘대통령 등의 경호’를 추가하지 않아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기관 의견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수사·치안·정보·보안·외사·경비·교통·사이버 등 광범위한 임무와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경우, 경찰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고, 대규모 조직과 잦은 인사 순환으로 인해 경호 보안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경호처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군·경찰·국정원·소방·외교부·식약처

3)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 법제 유의사항 내용 일부 발췌, p912.

가. 다른 법률의 실제적 내용을 개정하는지 여부
기구 신설을 위하여 법률을 개정할 때 신설된 기구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 중 관련 기관의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인 내용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4)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등 14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행되는 영역이므로, 경호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경호업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경찰청은 개정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유보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4
